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36호

「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0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강릉시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위로금 및 수당 조항 신설(안 제5조)
- 나. 예우 항목 추가(안 제6조 3호 및 4호)
- 다. 사업 조항 신설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rhdchfhd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”을 “의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”으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) ①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다만, 제1항 및 제2항의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

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중전의 제5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”를 “의상자 및 의사자유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강릉시 포상 조례」”를 “「강릉시 포상조례」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명절(설, 추석)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

4. 기념비·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

제7조(중전의 제6조) 중 “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”을 “의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사업) ① 시장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

2.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

3. 그 밖에 의사상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특별위로금 지급 구분표 (제5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| | 지 급 액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의사자유족 | | 30,000,000원 |
| 의상자 | 1급 | 15,000,000원 |
| | 2급 | 12,500,000원 |
| | 3급 | 10,000,000원 |
| | 4급 | 7,500,000원 |
| | 5급 | 5,000,000원 |
| | 6급 | 4,000,000원 |
| | 7급 | 3,000,000원 |
| | 8급 | 2,000,000원 |
| | 9급 | 1,000,000원 |

[별표 2]

수당 지급 구분표 (제5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| 月 지급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의사자유족 | 100,000원 |
| 1급 ~ 2급 의상자 | 80,000원 |
| 3급 ~ 4급 의상자 | 60,000원 |
| 5급 ~ 6급 의상자 | 40,000원 |
| 7급 ~ 9급 의상자 | 제 외 |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의상자(義傷者)”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)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</u>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.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) ----- ----- <u>의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) ① <u>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</u></p> |

제5조(예우) 시장은 의사상자가

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강릉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 포상

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3. (생략)

제6조(지원신청) 의사자의 유족

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족 1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다만, 제1항 및 제2항의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예우) -----

-----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-----
-----.

1. 「강릉시 포상조례」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명절(설, 추석)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

4. 기념비·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7조(지원신청) 의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-----

-----.

<신 설>

제8조(사업) ① 시장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
2.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
3. 그 밖에 의사상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[별표 1]
특별위로금 지급 구분표(제5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| 지 급 액 |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사자유족 | 30,000,000원 | |
| 의상자 | 1급 | 15,000,000원 |
| | 2급 | 12,500,000원 |
| | 3급 | 10,000,000원 |
| | 4급 | 7,500,000원 |
| | 5급 | 5,000,000원 |
| | 6급 | 4,000,000원 |
| | 7급 | 3,000,000원 |
| | 8급 | 2,000,000원 |
| | 9급 | 1,000,000원 |

<신 설>

[별표 2]
수당 지급 구분표(제5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| 月 지급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의사자유족 | 100,000원 |
| 1급 ~ 2급 의상자 | 80,000원 |
| 3급 ~ 4급 의상자 | 60,000원 |
| 5급 ~ 6급 의상자 | 40,000원 |
| 7급 ~ 9급 의상자 | 제 외 |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| 제·개정안 내용 | 의 건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|-----|
| | | |